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 
2025. 6. 23.(월) 10:00

#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 
공급 조례안  
(문화환경국 환경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732호
- 나. 제 출 자 : 윤영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## 2. 제안이유

현재 유용미생물복합기를 통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 등(안 제1조 ~ 제3조).
- 나. 공급대상, 생산 및 공급(안 제4조 ~ 제5조).
- 다. 공급제한(안 제6조).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4조제2항,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이유

본 제정안은 금천구 주민에게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생산·공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 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 등(안 제1조 ~ 제3조).
- 2) 공급대상, 생산 및 공급(안 제4조 ~ 제5조).
- 3) 공급제한(안 제6조).

### 다. 검토의견

- 유용미생물은 식품의 발효, 토질 및 수질 개선, 친환경 체험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, 이를 금천구 주민에게 공급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환경정책기본법

[시행 2025. 1. 1.] [법률 제20626호, 2024. 12. 31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 <개정 2021. 1. 5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 <개정 2021. 1. 5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1., 2021. 1. 5.>

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,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2. 1., 2021. 1. 5.>

## 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8. 8., 2024. 1. 9.>

### 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### 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사. 자연보호활동